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7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박덕흠 • 안상훈 • 김 건

엄태영・강승규・고동진

이종배 · 김용태 · 김장겸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정의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실·유기동물을 판단하는 공간적 기준을 공공장소로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행위를 동물 유기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7조).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장소"를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유실·유기(遺棄) 방지"를 "유실·유기 방지"로 한다.

2의2. "유기(遺棄)"란 동물의 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 등 장소에 동물을 버리거나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유기(遺棄)"란 동물의
	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
	물위탁관리업체 등 장소에 동
	물을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
	는 것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	3
· 공원 등의 <u>공공장소</u> 에서 소	<u>공공장소, 동물병</u>
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	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8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u>유실·유기 방지</u>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	
다.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1	\sim	3	(생	략)
----------	---	--------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 1. (생략)
- 2. ~ 8.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 12. (생략)
- ⑥ (생략)

제97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4)	 		 	 	

-----.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5)
<u>.</u>

<u><</u>삭 제>

- 2. ~ 12.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